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해외근무수당 연구

崔 容 鎬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2.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제정 배경 및 경과
3. 한국군 해외근무수당과 관련된 대미 협상 경과
4. 베트남전쟁에 파병한 미국 우방국 군인의 수당 비교
5. 결 론

1. 서 론

“당시 소위의 전투수당¹⁾은 152달러였지만 32달러는 정부가 가져가고 120달러만 주었다. 그래도 국내 봉급까지 합치면 월수입은 7.6배로 향상됐다.”

1)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costs of overseas allowances)’은 ‘해외수당’, 혹은 ‘일당(per diem)’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참전용사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투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 전투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전투수당과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명백하게 다른 개념이다.

이상의 내용은 베트남 참전용사이며, 자타가 인정하는 베트남전쟁사 및 관련 연구의 전문가로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저명인사가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²⁾

그의 주장과 함께 참전용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베트남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야 할 전투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로 인해 참전용사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면 어느 곳에서나 “나의 해외근무수당을 돌려다오!”, “우리가 흘린 피의 값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하자!”는 등의 글이 난무하고 있다.³⁾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은 민족 역사상 최대규모, 최장기간의 파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파병이었다. 아울러 1961년, 군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한·일 국교정상화와 함께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국가전략이었다. 또한 베트남파병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난무했던 한일회담과 달리 파병기간 내내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제3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통치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⁴⁾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베트남파병을 빼놓고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정부가 북베트남에 의해 점령당하면서부터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자

2) 그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그가 저서를 통해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7, p. 71 ; 이상우, “다큐멘터리 월남파병”, 『월간조선』 1983년 8월호, pp. 252~291 등의 자료를 그 근거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 자료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자료의 신뢰성이다. 그가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의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베트남 참전용사가 많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www.vvk.co.kr, www.vietvet.co.kr 등으로 그 곳을 방문하면 기타 참전용사들의 연결사이트가 소개되어 있다.

4) 홍규덕, “베트남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백산서당, 1999), pp. 75~90 ; 유윤식, 『한국군의 월남파병 정책결정』, 국방대학교, 2003, pp. 166~167.

연스럽게 잊혀졌다. 또한 관련 학술적인 연구도 홀리간 역사와 함께 묻혀 버렸다. 그로 인해 많은 논제들이 규명되지 못한 채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족쇄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제야 말로 더 늦기 전에 참전용사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 답하면서 그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출발했다. 그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많은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의 제정 배경과 대미협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은 최초 어떤 근거에 의해 제정됐으며, 당시의 여건에서 볼 때 적정 수준으로 편성됐는가?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다.

둘째,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어떠했나?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나?”라는 의문이다.

셋째,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용사들의 해외근무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국가기간사업 건설 등에 전용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넷째, “당시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있던 필리핀, 타일랜드 등의 해외근무수당과 비교해 한국군의 수당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나? 그 과정에서 한국군의 수당은 적정했나?”라는 의문이다.

다섯째,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참전용사들의 해외근무수당 협상에 임하면서 국가안보, 군사력 증강, 경제개발 등에 치우쳐 과도한 양보가 있었나?”라는 의문에 대해서다.

필자(筆者)는 해외근무수당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다섯 가지 의문에 대해 답하면서 가급적 필자의 주장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1차 사료를 통해, 그렇지 못할 경우 제3국의 2차 사료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의

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째 질문은 위 4개항의 의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 되도록 할 것이다.

2.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제정 배경 및 경과

(1) 베트남 파병 전까지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인식

한국 정부는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에 의해 “군인보수법”을 제정했다. 제정된 법률에는 제정목적(제1조)으로부터 봉급(제7조), 가족수당(제13조), 주택수당(제14조), 특별급여(제16조), 전투수당(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⁵⁾ 당시 정부가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파병의 목적과 병력규모, 운영 및 지원체제 등의 기본계획은 물론 현지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과 부대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각종 지원대책 등 보장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수히 많다. 그 중에는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에 파견될 군인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의 문제도 심층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9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해외에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사력 역시 유엔군의 작전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구비할만한 경험과 여유도 없었다.⁶⁾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베트남전쟁자료철 No. 2004-03, 2004, pp. 1~7.

6) 외교부 공개문서(2005. 8. 26) 참조.

당시 집권층은 군사력 운용에 관한한 유엔군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주한 미군사령부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자문을 받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해외파병 역시 한국은 파병될 인력만 준비하면 나머지 군사력운영과 지원에 관한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파병되는 병력에게 지급할 해외근무수당 등 복지혜택조차도 당연히 미국이 해결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 같은 배경에 따라 당시 한국의 집권층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있게 한국군의 파병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⁷⁾

(2) 이동외과병원 파병을 위한 대미 협상과 해외근무수당

1964년 5월 9일, 존슨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자유우방 25개국에 대해 ‘베트남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書翰)을 보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존슨의 서한은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박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는데, 한국군 이동외과병원의 파병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⁸⁾ 그 때부터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파병부대를 선정하고 세부계획을 검토하는 등 급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베트남의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파병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국가적인 주요정책과 전략 중 정무적인 분야는 주한 미 대사와 협의하고 군사적인 분야는 주한 미군사령관과 협의해 처리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주한 미군사령부를 대상기관으로 베트남 파병의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해 나갔으며,

7) 1964년 7월 28일,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동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 4개월 동안 이동외과병원을 파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3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1년 동안 파병한다면 3,900만 원이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은 당시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의 0.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임을 고려할 때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국가예산운영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를 초래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제44회 국회 국방위 2차 회의 속기록 참조.

8) 국방부, 『과월전사』 제1권(상),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8, p. 89.

양국의 실무자가 실무적인 토의를 반복하면서 파병계획을 발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130명 규모의 이동외과병원과 10명 규모의 태권도교관단을 파병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1964년 7월 9일, 김종오 합참의장을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스(Hemilton H. Howze) 대장에게 보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게 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다음날인 7월 10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스 대장에게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의 파견동의를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국방부장관 서한을 보냈다.

전일 합동참모회의 의장 김종오 대장이 귀하를 방문해 협의한 바 있는 중강된 1개 MASH와 태권도교관 10명의 파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략~ 이 부대를 귀하의 작전지휘하로부터 해제하여 월남에 파견하는데 대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⁹⁾

하우스 대장은 7월 16일,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파병동의 요청에 답하는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인원차출(release)’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답변서를 보내 왔다.

미국 국방성은 이들 부대(주: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의 이동 및 추후 계속될 운영을 위한 군수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은 군사원조계획 중 적절한 절차에 의거 MAP계통을 통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제공될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한국군의 능력으로서는 제공할 수 없는 MASH TO/A에 수록된 본 사령부가 승인하는 편제상 장비
- 나. 운영 및 정비 보급품과 용역
- 다. 군 요원을 위한 급식 및 피복, 관계된 인원들에 대한 봉급, 출장비 및 일당, 또는 다른 급여는 상기한 바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¹⁰⁾

9)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5, pp. 603~604.

10)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 604.

한국 정부가 하우스 대장에게 보낸 공한에는 ‘지휘권해제’ 외에 미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구체적인 지원사항과 함께 자신들의 지원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문서상으로는 남아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요청이 사전에 전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요청에는 파병되는 장병에게 지급할 봉급, 출장비 및 일당 등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답변은 “장비 및 군수지원을 제외한 장병 개인에 대한 지원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지원한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지원한계를 명확히 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체예산으로 각 개 장병에게 지급할 해외근무수당 편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한국 정부는 해외파병의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같은 사실은 1963년 5월 1일,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된 “군인보수법”의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¹⁾

(3) 해외근무수당의 제정 근거 및 경과

1963년 “군인보수법”을 제정할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해외근무수당이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이동외과병원 파병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동외과병원을 1964년 8월 말까지 출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한 미군사령부에 통보했던 국방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작성한 1964년 7월 23일자 문서에서 최초로 계급별 해외근무수당을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이어서 정부는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파병동의안 심의에 착수한 날인 1964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1895호에 의거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해외근무수당은 최초로 법적인 근거를 갖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베트남전쟁자료철 No. 2004-03, 2004, pp. 1~7.

게 됐다. 당시 국회에 제출되고,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해외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액은 <표 1>과 같다.¹²⁾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요청내용을 설명했다.¹³⁾ 그 과정에서 김장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최초로 제정된 “해외근무수당지급규정”이었다.

의원들의 보충질의 및 설명을 통해 김성은 장관이 밝힌 해외근무수당의 편성기준은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입장에 있던 타일랜드와 남베트남에서 군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유사한 수당을 참고해 편성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장관이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두 나라의 파병 및 참전 군인에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액은 <표 2>와 같다.

김장관의 설명에 대해 의원들은 대부분 수당의 액수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중 김정근 의원은 해외에 파견된 무관과 외교관의 예를 들어 군인들의 해외근무수당이 과도하게 높게 편성되어 있음을 따졌다. 그 후 토의가 계속되면서 <표 3>과 같이 상위직위자의 수당은 높은 반면 하위직의 수당이 낮다는 상후하박(上厚下薄)의 문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표 1> 해외근무수당 계급별 지급액

(단위 : 달러)

구 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일	7.00	6.50	5.50	5.00	4.50	4.00	2.50	2.00	1.50	1.20	1.00	0.80	0.60
월(30일)	210	195	165	150	135	120	75	60	45	36	30	24	18

자료 : 대통령령 제1895호(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참조.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베트남전쟁자료철 No. 2004-03, 2004, pp. 1~8.

13) 정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요청”이 최초로 심의된 것은 1964년 7월 28일,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2차 회의였다: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1964. 7. 28 : <http://www.assembly.go.kr/index.jsp>(검색일 : 2005. 10. 19).

<표 2> 한국과 타일랜드 및 남베트남의 군인에게 지급되는 1일 수당액
(단위 : 달러)

구 분	대 령	중 령	상 병
타일랜드	10.00	8.00	1.25
남베트남	6.10	6.00	0.30
한 국	7.00	6.50	1.00

자료 :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4차 회의록, <http://www.assembly.go.kr/index.jsp>

<표 3> 해외근무수당 편성근거 및 질의 내용

구 분	질 의 내 용
황인원 의원	파병경비의 전액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도록 노력할 것
김정근 의원	해외수당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 해외근무 무관의 경우 소위40\$, 대위50\$, 소령60\$, 중·대령 70\$, - 외교관의 경우 3급갑류 60\$와 비교 해외수당은 3배 수준이다. - 타일랜드는 연간수출 5억\$(한국 1.2억)로 한국보다 생활수준이 월등히 높다.
정일형 의원	하위직의 수당이 과도하게 낮게 편성됐다. - 나라 형편이 어렵더라도 열사지역에 파병되는 병사의 처우는 고려 - 병력의 다수를 점하는 하위직의 수당을 인상할 필요
한건수 의원	해외수당이 상후하박(上厚下薄)으로 편성됐다. - 병력의 다수를 점하는 하위직의 수당이 과도하게 낮다. - 상위직은 깎고 하위직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건수 의원의 주장에 정일형, 김정근 의원 가세

자료 :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제4호, <http://www.assembly.go.kr/index.jsp>.

1964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된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와 김성은 장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군의 수당 등 비용일체를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노력하라!”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그렇잖아도 한국군 파병경비 일체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한국전쟁에 파병된 유엔군은 수당과 비용 모두를 각국의 부담으로 참전했다’며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따라서 최초에는 더 많은 부대를 파병하려 했으나 비용관계로 인해 최소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외근무수당이 고액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파병 대상이 군의관이며, 건군 이래 최초의 파병으로 우수한 인원을 파병해야 하기 때문에 군의관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편성된 정도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함께 파병되는 의정장교 및 보병장교는 군의관보다 더 낮은 액수의 수당을 검토했으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파병될 장병들에게 편성된 수당기준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대령은 금번 파병이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으나 나머지 계급을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며 “국방부의 체면을 고려해 더 이상 삭감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의원들의 질의 및 요구에 직면한 국방부는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대령과 중령의 수당액을 삭감하고 대신에 하위직을 인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1964년 9월 10일, 대통령 제1930호로 같은 해 7월 28일 제정된 “해외수당지급규정”의 일부를 개정 발표했다. 개정된 지급액은 <표 4>와 같다.¹⁴⁾

<표 4> 개정 후·전 해외근무수당 계급별 지급액 비교

(단위 : 달러)

구 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일병
최초기준	7.00	6.50	5.50	5.00	4.50	4.00	2.50	2.00	1.50	1.20	1.00	0.60
개정기준	6.50	6.00	5.50	5.00	4.50	4.00	2.50	2.00	1.50	1.20	1.10	1.00
차액(1일)	-0.50	-0.50	0	0	0	0	0	0	0	0	+0.10	+0.40

자료 : 대통령령 제1895호(1964. 7. 28)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 추가공개자료 #2 참조.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군인보수법 법령집, 2004), p. 9.

한편 국방부는 파병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일당과 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도록 재차 요청했다. 그 내용은 “파병동의안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은 1964년도 파병경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파병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1964년 12월 31일 이후 소요되는 경비는 미국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한국군의 일당과 수당지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은 확고했다. 한국 정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하우스 대장은 1964년 8월 5일, 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은 워싱턴 당국에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될 한국군의 봉급, 수당, 일당을 196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지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위치는 세계적 관습에 입각해 베트남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봉급, 일당, 수당은 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아가 귀국이 베트남공화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진해서 원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¹⁵⁾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한국군 해외군무수당 제정 배경과 함께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군의 해외군무수당은 타일랜드, 남베트남 등 외국군의 수당지급 기준을 참고해 1964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1895호에 의거 최초로 제정됐다. 그 후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로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 1964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1930호로 일부 개정되어 <표 4>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정된 수당액이 시행됐다.¹⁶⁾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영향은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해외수당의 기준이 설정되고 제정되

15)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 612.

16) 제44회 국회(1964), 국방위 회의록 참조.

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군의 수당지급 실태가 한국군의 수당 제정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며, 주한 미군사령부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군의 수당 제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군의 수당지급실태는 당시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너무 현격했기 때문에 결코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등의 경우도 유사했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근사치에 있던 타일랜드 및 남베트남의 수당지급 기준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 해외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액은 하위직이 적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⁷⁾

3. 한국군 해외근무수당과 관련된 대미 협상 경과

(1)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및 경과

1964년 8월 7일, 미국 의회가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됐다. 그때부터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위해 보다 많은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1964년 12월 18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 대사를 박대통령에게 보내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했다.

17) 제44회 국회(1964), 국방위 회의록 참조.

미국의 요청을 기대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는 박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 미군사령부와 건설지원단 파병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한국측 협상 대표인 김종오 합참의장이 주한 미군사령부를 방문해 하우스 대장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국군 장병에게 지급될 일당 및 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부담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였다.

최종적으로 12월 22일, 김종오 합참의장이 하우스 대장을 찾아가 미국 정부의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하우스 대장은 12월 25일, 김종오 대장에게 실무각서(Aide Memoire)를 보내 왔다. 실무각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동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해외수당 관련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방침을 바꿔 “한국군의 일당을 미국 정부가 부담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것이다.¹⁸⁾

〈김종오 대장에게 보내는 실무각서(Aide memoire) : 1964. 12. 25〉

1. 1964년 12월 22일 오후, ~이하 생략~
2.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비용부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일당(Per Diem)

대령	\$6.50	대위	\$5.00	상사	\$2.50	병장	\$1.20
중령	\$6.00	중위	\$4.50	중사	\$2.00	상병	\$1.10
소령	\$5.50	소위	\$4.00	하사	\$1.50	일병	\$1.00

b. 현 한국군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당 지급

c. 정비 및 운영 보급품과 베트남에서의 적절한 보급 ~ 이하 생략 ~¹⁹⁾

하우스 대장의 서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완강했던 그들의 방침을 바꾼 것은 “미국의 안보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의 원조와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국가였다”²⁰⁾는 사실

18)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3, pp. 119~121.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 04-01”, Howze 대장 서한철, 1964. 12. 25, pp. 1~2.

과 함께 베트남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다급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은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 140명의 1년분 파병경비 3,900만원이 전체 국방비의 0.5%에 해당될 정도로 열악한 수준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1,000여 명에 이르는 파병예산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했다면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 파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 정부도 그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해외수당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은 파격적인 것이었으며, 어떤 국가에게도 적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례였다.²²⁾ 따라서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은 한국에 뒤이어 파병하게 되는 필리핀과 타일랜드 등의 해외수당을 미국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례가 되기에 충분했다.

한편 파병협상이 진척되면서 건설지원단의 파병 규모가 2,000여 명으로 확대되고,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편성되었으며, 준위가 추가로 파병됨에 따라 두 계급의 수당을 새롭게 편성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65년 1월 8일자 서한을 통해 준장 10.00\$, 준위 3.50\$의 일당 책정을 미국측에 요구했다.²³⁾

20)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랜드 장군도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타일랜드는 미국 정부가 파병비용을 부담했는데, 두 국가는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써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에 따르는 돈과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 William C. Westmoreland, A Soldier Reports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76), pp. 255~256.

21)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30, 1961, “Presentation of Letters by Korean Ambassado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관련 자료철” 제1권(원자료 소장처 : JFK Library).

2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역,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사이명턴위원회 청문록,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제140호, 1971, pp. 54~55, 76~77.

일당(Per Diem)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스 대장은 1965년 1월 11일자 서한을 통해 준장 7.00\$, 준위 3.50\$로 통보했으며, 미군측의 통보대로 결정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요구한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²⁴⁾

한편 국방부는 건설지원단 파병을 위해 추가된 계급에 대한 해외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1965년 1월 27일자 대통령령 제2045호로 군인보수법시행령을 제정하고, 1965년 1월 1일부로 소급적용 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군인보수법(1963. 5. 1 : 법률 제1338호)에 명시되지 않았던 병장~이병까지 봉급액을 명시했으며, 각종수당 지급을 구체화함과 아울러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10달러, 준위 3.5달러의 해외수당을 추가했다.²⁵⁾

그 후 계급별 법령에 의한 해외수당 지급기준은 소장직위 신설(1966. 1. 7 : 대통령령 제2364호), 하사 이하 하위직 수당 인상(1966. 5. 30 : 대통령령 제2545호), 군인보수법시행령 일부 개정(1966. 6. 9 : 대통령령 제2561호) 등 3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통해 준장의 수당액을 미국측과 합의한 7달러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최초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1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중장직위 신설(1966. 9. 12 : 대통령령 제2749호)을 통해 중장 10달러, 소장 8달러, 준장 7달러로 바로 잡았다.²⁶⁾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 04-01”, Howze 대장 서한철, 1964. 12. 25, pp. 38~40 ;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 615.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 04-01”, Howze 대장 서한철, 1964. 12. 25.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법령자료집』, 2004, pp. 1~16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육군중앙경리단, 1999), p. 37.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인보수법 법령자료집』, 2004, pp. 17~36.

(2) 한국 정부의 수당인상 및 전투수당 신설 요구와 미국 정부의 대응

한·미 양국은 한국군 제2차 파병 즉, 건설지원단 파병을 계기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군의 해외수당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회만 되면 해외수당의 인상, 또는 전투수당 등 또 다른 수당의 신설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기왕에 합의한 한국군의 해외수당 지급마저도 그들의 의회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내고자 했다.²⁷⁾

그처럼 미국 정부는 한국군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의회의 견제,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에 따라 많은 신경을 썼다. 따라서 입장이 다른 양국 정부의 협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자료들은 그 같은 미국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주월 한국군의 수당지불 실무각서(Aide Memoire) : 1965년 2월 13일자〉

1. 귀하에게 드린 1964년 12월 25일자 각서에서 본인은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가는 귀 국군부대에게 지불될 이른바 해외근무수당 즉, 일당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2. 베트남에서 복무하고 있는 국제 군사원조부대에 현재 지불되고 있는 수당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미군 당국은 계급에 구애됨 없이 1인당 1일 1달러가 개인의 1일 소요를 충당하는데 적절한 액수임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액에 대해 동의하며 이 액수가 (베트남에 파병된) 국제 군사원조부대 전체를 통한 기준이 되어 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 이하생략 ~²⁸⁾

27) 공군 대령 컨리드, “Dear Me. Lee”, 미1 합동군사고문단, 1970. 3. 2; 국방부, “비밀문서 보관유지에 관한 지시”, 이제960-9, 1970. 3. 7.

〈의료지원단 요원에 대한 해외수당 지급 동의 : 1965년 3월 8일자〉

미국 정부는 1965년 3월 1일부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지도요원에게 베트남에 새로 파견된 ROK-MAG-V요원과 같은 기준으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이동외과병원을 포함한 ROK-MAG-V 해외수당 지급절차에 관하여 근간 국방부 재정국과 더불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와 기타 국방부 당국자에게 전에도 시사했듯이 미국 정부는 해외수당 비용을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²⁹⁾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은 미국 정부의 우려는 얼마 후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수당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후에 작성된 ‘브라운각서(서한)’의 문제는 1970년 2월, 상원(上院) ‘안보협정 및 대외공약소위원회(일명 사이밍턴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파병된 한국군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용병(傭兵)이 아닌가?”라고 질문하기도 했으며, ‘한국군 용병론’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⁰⁾

한국 정부의 많은 요구에 대해 미국 정부가 매우 곤혹스러워 했던 기록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이 매우 긴박했다. 그 같은 사정에 따라 존슨 미 대통령은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1965년 5월, 박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그리고 두 나라 정상은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존슨은 한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이어진 한국의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의 파병협상도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개념이었다. 따라서 주한 미군사령부 역시 다소 무리하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추가공개자료 #6 참조;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 620.

29)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p. 621~622.

30)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1, pp. 19~46.

다고 여겼던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Dwight E. Beachs) 대장은 1965년 7월 9일, 김성은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군 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군 베트남파병안에 관련된 문제점 해결 동의 서한 : 1965. 7. 9〉

1~8항 : 생략

9.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재정지원 전반에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전투수당, 전사사금(戰死賜金) 및 한국군이 필요한 베트남 원주민의 사용 등 특수한 문제점들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중략~

10. 귀국군(貴國軍) 보수법 제17조에 전투수당은 각령에 의한 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중략~ 이 전투수당을 주일 한국군 인원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귀 정부가 내려야 할 일방적인 결정사항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³¹⁾

위와 같은 비치 대장의 서한(1965. 7. 9)을 통해 당시 한국 정부는 해외 근무수당은 물론 추가적으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라도 다른 파병국가와의 형평성 및 자국 내의 반대세력을 의식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3) '브라운각서'와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부담하는 해외근무수당의 기준액을 최소화하면서 지급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나가려 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

31)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p. 636~637.

의 입장에 여유가 있었다면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66년에 접어들어 베트남전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가 더욱 절실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조기에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실현시켜야 했다.

그 같은 입장에서 주한 미군사령관 비치 대장은 1966년 1월 18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제공할 한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한 군사원조, 군원 이관계획의 중지, 한국의 상품 구매 등 전반적인 지원요소를 망라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는데, 그 중 해외근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주한 미군사령관의 전투부대 증파관련 공한 : 1966. 1. 18〉

~ 앞부분 생략 ~ 미국은 수송관계, 파병군의 해외 유지, 비전투요원의 봉급과 해외수당 등 경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자의 위로금, 전상자의 보상금도 부담할 것입니다. ~ 이하 생략 ~³²⁾

한편 당시의 한국 정부는 전투병력 증파가 다급한 입장에 있는 미국 정부와 추가파병협상을 통해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국군 전체의 전력증강,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 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협상의 창구를 확대해 주한 미군사령관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모든 요소들을 새롭게 검토하고자 했다. 그 같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9사단 파병을 위한 대미협상은 이제까지의 3차례에 걸친 파병협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를 위해 협상창구를 외무부로 일원화해 이동원 외무장관이 전담하게 했다.³³⁾ 또한 장기영 부총리는 AID를 상대로 경제원조 문제를 담당하고,

32) 국방부, 『파월전사』 제10권, 1985, p. 645.

33)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992, pp. 103~126.

김성은 국방장관은 비치 주한 미군사령관을 상대로 군사적인 실무협상을 병행하게 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하위직 파월용사들의 해외근무수당 인상, 한국의 남베트남 수출품목을 2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 등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한국의 안보관련 문제 등에 합의했다.

양측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자 1966년 2월 23일, 양국의 협상대표였던 이동원 장관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는 이제까지의 회담결과를 기초로 ‘한·미 합의의사록’을 작성해 서명했다. 그리고 브라운 대사가 합의의사록을 기초로 재정리한 서한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식적인 문서 즉 ‘브라운각서(서한)(1966. 3. 4)’로 만들어 3월 7일, 한국 정부에 보내 왔다.³⁴⁾

브라운각서(서한)의 내용 중 해외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은 군사협조 제9항에 명시되었다. 그와 관련된 김성은 장관과 비치 대장의 협상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전투수당 신설 등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대신에 양국은 병력의 대다수를 점하는 한국군 하위직의 수당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같은 합의에 따라 김성은 장관이 비치 대장에게 보내는 1966년 3월 4일자 서한을 통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하위직 병사(하사~병장)의 해외근무수당을 <표 5>와 같은 액수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비치 대장이 같은 날짜의 서한을 통해 김성은 장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옴으로써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³⁵⁾

34) 일반적으로 ‘브라운각서(Brown Memorandum)’로 알려진 1966년 3월 4일자 브라운 문서는 문서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는 서한(letter)형식의 문서였다. 그러나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약속을 명기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부분 각서(memorandum)로 간주하고 공식적인 문서에도 각서로 표기해 왔다. 반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서한(letter)으로 표기한다. : 국방부, 『국방조약집』 제1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264~267;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1971), pp. 31-32.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추가공개자료 #7, #8 참조.

<표 5> 브라운각서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 한국군 하위직의 1일 수당액
(단위 : 달러)

구 분	하 사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기존 지급액	1.50	1.20	1.10	1.00	
수정 지급액	1.90	1.80	1.50	1.35	1.25
증감(인상율)	+0.40(26.7)	+0.60(50.0)	+0.40(36.4)	+0.35(35.0)	신설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추가공개자료 #7~#8 참조.

<표 6> 하위직 해외근무수당 인상 전·후 수당액 비교
(단위 : 달러)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병	
		병력 수	수당총액	병력 수	수당액	병력 수	수당액
6월 결산액		26,492	1,161,509.80	1,929	265,690.00	24,563	895,819.80
7월 결산액		28,062	1,539,819.95	2,004	281,810.50	26,058	1,258,009.45
증감	인/\$	+1579	+378,310.15	+75	+16,120.50	+1,495	+362,189.65
	%	+5.9	+32.6	+3.9	+6.1	+6.1	+40.4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추가공개자료 # 9 참조.

제9사단 파병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게 된 한국군 하위직위자 해외근무수당 인상으로 한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병사들의 요구를 해소해 주면서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그 같은 효과는 <표 6>과 같이 하위직 해외근무수당의 인상이 시행된 1966년 7월과 시행 전인 6월의 해외근무수당 결산액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브라운각서를 근거로 하는 베트남파병 한국군 하위직의 해외근무수당 인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전투수당 신설, 재해

보상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수당 및 재해보상금 협상은 1966년 3월 4일 이후 더 이상의 변화가 없었다.³⁶⁾

(4) 해외근무수당의 청구 및 결산 절차

1965년 3월 22일,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이 파병되면서 1964년 9월에 파병된 한국군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은 건설지원단 예하부대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해외근무수당 역시 건설지원단 장병과 함께 미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국방부 재정국은 주한 미군사령부 군사고문단과 월 단위로 해외근무수당의 청구 및 결산체제를 구축했다. 당시 해외근무수당의 신청 및 자금수령, 지급 및 결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매월 10일까지 수당지급에 필요한 일보(계급별 병력현황)를 국방부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2. 총무과장은 수당을 당월 12일까지 국방부 재정국장에게 청구한다.
3. 재정국장은 접수한 수당지급 소요자금을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에게 당월 14일까지 신청한다.
4. 재정국장은 당월 15일까지 수당지급 소요자금 수령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한다.
5. 총무과장은 당월 17일까지 수당지급 소요자금을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주한 미군사령부 관리부장)으로부터 수령한다.
6. 총무과장은 매월 18까지 주월 한국군군사원조단장(한국군사령관)에게 수당을 송금하고, 매월 25일 기준으로 각개 장병에게 지급하게 한다.
7. 한국군군사원조단장은 수당지급 명세서를 증빙서류 첨부 익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36) 한국군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조정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정리한 표 및 당시 환율 등의 자료는 최용호,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미국의 지원과 ‘용병(傭兵) 주장’ 분석”, 『군사 제4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239~277 참조.

8. 총무과장은 한국군군사원조단에 지출된 경리내역과 수당지급 명세서를 익월 25일까지 재정국장에게 보고한다.
9. 재정국장은 익월 말까지 미 합동군사고문단장(주한 미군사령부 관리부장)과 지급된 수당과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³⁷⁾

한편 수당 지급기간 산출은 각개 장병이 한국에서 베트남을 향해 출발한 당일부터 한국의 공항 및 항구에 도착하는 날까지로 했다. 또한 1966년 2월 8일부터는 베트남 출장자에 대해서도 파병된 장병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합의했다.³⁸⁾

위에 지시된 바와 같은 지급기준과 절차에 의해 베트남파병 기간동안 한국군(출장자 포함)의 해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총액 및 연도별 금액, 본국 송금액과 현지소비액은 <표 7>과 같다.

<표 7> 해외근무수당지급 및 송금현황

(단위 : 1,000달러)

연도별	수당지급액	본국송금액 (%)	현지소비액 (%)
총 계	235,568.4	194,729.4(82.7)	40,839.0 (17.3)
1965	3,059.1	1,797.3 (58.8)	1,261.8 (41.2)
1966	19,757.6	14,882.2 (75.3)	4,875.4 (24.7)
1967	33,906.8	27,689.2 (81.7)	6,217.6 (18.3)
1968	36,599.5	29,409.8 (80.4)	7,189.7 (19.6)
1969	36,982.7	31,625.8 (85.5)	5,356.9 (14.5)
1970	36,128.6	29,372.9 (81.3)	6,755.7 (18.7)
1971	35,668.0	30,294.6 (84.9)	5,373.4 (15.1)
1972	29,519.2	25,710.7 (87.0)	3,808.5 (13.0)
1973	3,946.9	3,946.9 (100)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추가공개자료 # 10 참조.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본 팜프렛 부록 #9 참조.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Joserh W. Scavlan Colonel, USAF Comptroller, "Letter : Dear General Hwang", 8 Feburary 1966.

〈표 7〉과 같이 2억 3,000만 달러를 넘는 금액이 해외근무수당으로 장병들에게 지급됐으며, 그중 2억 달러에 가까운 외화가 국내에 송금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소비한 금액도 대부분 TV,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사용됐기 때문에 해외근무수당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 유입됐다고 볼 수 있다.

그 같은 해외수당 송금액은 원화로 교환되어 각개 장병의 가정에 송금됨으로써 궁핍했던 가정경제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국가경제를 역동적으로 바꾸는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송금액 전액이 장병의 가정에 지불됐지만, 대일청구권자금중 무상원조로 받아낸 3억 달러와 유사한 규모의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정부는 베트남전쟁 수행과정에서 유입된 외화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의 그 기반을 조성했다.

결과적으로 파월장병의 송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된 달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개 장병들의 가정에는 원화로 교환된 송금액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외수당은 1개월 단위로 일보에 의해 신청되고, 한·미 합동군사고문단과 결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4. 베트남전쟁에 파병한 미국 우방국 군인의 수당 비교

(1) 기존자료의 한계 및 영향

베트남전쟁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던 미국의 우방국 군인

에게 지급된 수당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았다. 그중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자료는 합동통신사가 발행한 『합동연감』, 1967년, pp. 70~71에 제시된 “해외근무수당 및 기타”의 항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용자들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동 자료 71쪽에 제시된 <표 8>과 같은 자료를 ‘주요참전국의 봉급수준비교’, 또는 ‘참전국의 수당현황 비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제시된 자료를 잘못 이해한 일부 연구자들이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용, 재인용을 반복함으로써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표 8> 주월 각국 군대의 월별 보수액 비교

(단위 : 달러)

구 분	한국	남베트남	미 국	필리핀	타일랜드
소 장	354.16	217.38	1,294.15	-	-
준 장	320.00	212.35	1,060.65	641.60	-
대 령	291.72	170.43	833.15	590.40	590.76
중 령	256.67	153.66	686.65	539.20	563.39
소 령	224.57	138.56	601.45	500.80	518.43
대 위	190.40	123.48	569.05	475.20	406.92
중 위	166.70	111.74	483.85	454.72	395.19
소 위	151.55	103.35	435.85	441.92	389.33
준 위	137.74	86.58	430.15	404.80	-
상 사	102.50	76.51	402.25	284.80	266.39
중 사	86.35	69.82	366.25	282.24	261.51
하 사	82.90	68.13	333.35	279.68	257.60
병 장	64.47	62.64	304.75	-	-
상 병	56.83	58.53	259.15	-	-
일 병	51.36	57.16	238.73	-	-
이 병	51.11	55.79	235.15	-	-

자료 :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67, p. 71.

있다. 또한 한번 잘못 사용된 자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연구자들과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³⁹⁾

『합동연감』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한국군의 기본봉급 및 가족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표 8>에 제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1967년 4월 1일~196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한국군의 봉급정액표에 의해 산출된 봉급의 달러 환산액은 <표 9>와 같다.

<표 10>의 자료를 기초로 한국군의 월별 보수액을 산출하면 <표 11>과 같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며, 위에서 제시한 “합동연감”의 자료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기초로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표 9> 군인 봉급표(1967. 4. 1~1967. 12. 31)

구 분	월 지급액(원)	달러 환산액	구 분	월 지급액(원)	달러 환산액
중 장	54.140	196.87	준위8호	15.390	55.96
소장4호	43.890	159.60	상사8호	12.060	43.85
준장4호	38.430	139.75	중사5호	8.890	32.32
대령7호	35.860	130.40	하사4호	4.740	17.24
중령7호	28.000	101.82	병 장	460	1.67
소령6호	22.610	82.22	상 병	410	1.49
대위5호	16.050	58.36	일 병	340	1.24
중위3호	11.330	41.20	이 병	300	1.09
소위2호	10.190	39.24			

자료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 1950~1998, 1999, pp. 62~65 요약정리.

39)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상우, “다큐멘터리 월남파병”, 『월간조선』 1983년 8월호, 조선일보사, 1983, pp. 252~291에 제시된 자료를 인용한 일부 연구자들이 자료의 근거를 “이상우, 『합동연감』, 1967, pp. 280”으로 명시하는 등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표 10> 당시 환율

(단위 : 달러 / 원)

연도	1963	1966	1967	1969	1970	1971	1972	1973
1\$: 원	255	255	275	275	290	320	320	345

자료 :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 248.

<표 11> 한국군의 월 보수액 및 기타 자료와 비교(1967. 4. 30 기준)

구 분	한국군의 월 보수액(달러) : A			합동연감 : B	차 이 : B-A	동아연감 : C	차이 : C-A
	계	기본 봉급	해외수당				
중 장	496.87	196.87	300.00	-	-	-	-
소장4호	399.60	159.60	240.00	354.16	-45.44	354.16	합동연감과 동일
준장4호	349.75	139.75	210.00	320.00	-29.75	320.00	
대령7호	325.40	130.40	195.00	291.72	-33.68	291.72	
중령7호	281.82	101.82	180.00	256.67	-25.15	256.67	
소령6호	247.22	82.22	165.00	224.57	-22.65	224.57	
대위5호	208.36	58.36	150.00	190.40	-17.96	190.40	
중위3호	167.20	41.20	135.00	166.70	-5.00	166.70	
소위2호	159.24	39.24	120.00	151.55	-7.69	151.55	
준위8호	160.96	55.96	105.00	137.14	-23.82	137.14	
상사8호	118.85	43.85	75.00	102.50	-16.32	102.50	
중사5호	92.32	32.32	60.00	86.35	-5.97	86.35	
하사4호	74.24	17.24	57.00	82.90	+8.66	57.00	-17.24
병 장	55.67	1.67	54.00	64.47	+8.80	54.00	-1.67
상 병	46.49	1.49	45.00	56.83	+10.34	45.00	-1.49
일 병	41.74	1.24	40.50	51.36	+9.62	40.00	-1.74
이 병	38.09	1.09	37.50	51.11	+13.02	40.50	+2.41

자료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 1950~1998, 1999, pp. 62~65 요약정리.

발간된 “동아연감”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연감은 합동연감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면서 한국군 병사(하사~이병)의 봉급수준을 조정해 제시했다.⁴⁰⁾

〈표 11〉과 같이 당시 한국군의 기본봉급 및 수당자료와 합동연감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교의 경우 호봉의 차이, 환율적용 시기, 또는 공제액(소득세, 기여금, 보험료)을 적용한 후 금액 등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근사치에 접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장의 경우 354.16달러 중 해외수당 240달러를 제외하면 114.16달러를 기본봉급으로 볼 수 있는데 1967년 환율(1\$=275원)을 적용할 경우 31,394원으로 당시 소장4호봉의 공제액(소득세 3,944원, 기여금 1,290원, 보험료 200원)을 적용할 경우 3만 1,526원으로 유사하게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연감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연구의 서론에서 지적한 소위의 경우에도 151.55달러 중 해외수당 120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31.55달러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8,676원이 되는데 소위3호봉의 공제액 적용 전 금액이 8,600원이었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¹⁾

반면 하사의 경우는 82.90달러 중 해외수당 57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25.9달러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7,122원이 되는데, 호봉이 가장 높은 하사7호봉의 공제액 적용 전 금액이 5,37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6.37달러의 착오가 생긴다. 병장~이등병까지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하사~이등병까지의 봉급액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점을 인식한 동아연감은 해당 계급의 봉급을 해외근무수당 중심으로 조정해

40) 동아일보사, 『동아연감』, 1967, pp. 280.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봉급과 해외근무수당을 합산해 놓은 합동연감의 자료를 해외근무수당만으로 간주해 “정부가 32달러를 가져갔다”고 기록해 놓은 참전용사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만원, 『지만원 박사가 밝히는 월남전의 진실』, 시스템사회운동, 2002, p. 13.

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부정확한 합동연감의 자료를 활용해 당시 한국군의 해외수당을 평가하고 있는 논문들은 당연히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외국군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미국이 우방국의 베트남 파병을 조건으로 지원한 군사원조와 해외수당 등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그랬던 것처럼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 주도록 요구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며 신뢰성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늘날에도 베트남전쟁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의 지원을 얻어냈던 필리핀과 타일랜드는 관련 사실을 부정하거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⁴²⁾

(2) 필리핀의 해외군무수당

베트남전쟁 파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군보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가맹국인 필리핀군을 파병하는 것이 명분에서 앞서는 것으로 판단했다.⁴³⁾ 따라서 우방국을 베트남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한국보다는 필리핀에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국과 필리핀의 파병협상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의 ‘억지에 가까운 지원요구’ 때문이었다.

42) 주 필리핀 한국 국방무관의 보고에 의하면 베트남전쟁시 파병된 필리핀군에게 지급된 해외수당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필리핀 정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1966~1967까지 필리핀은 2,200명 규모의 민사단(Civic Action Group)을 파병했다. 파병장병의 수당으로 장교는 국내 급여의 1배, 사병은 2배를 추가 지급했지만 공화국법률 제4162호에 의거 미국의 지원이 아닌 공화국의 국방비에서 지출했다. 기간 중 미국의 지원은 베트남 주둔비용 일체와 장비, 탄약 및 보급품 등 주둔비용 일체를 부담했으며, 장병의 해외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무관보고(주필무첩05-106), “주재국 군 베트남전 참전시 해외수당 관련 보고 05. 06. 07: 반면 타일랜드의 경우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무관보고(주태무첩05-253), RFI응신. 05. 09. 26.

43) 최용호(2004), pp. 128~129.

The ROK looks very good. the Philipinos are holding us up for an outrageous pay and allowances bill(\$8 per diem for a Phillippino GI) :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 한국의 전망은 매우 좋다. 필리핀은 터무니 없는 봉급과 수당을 우리에게 뜯어가려 하고(be holding us up) 있다(병사 일당 8달러).⁴⁴⁾

그 결과 미국과 필리핀은 줄 당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필리핀군의 파병은 지연되고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군에 앞서 파병협상이 시작된 필리핀군은 전투부대가 아닌 2,000여 명 규모의 민사단(Civic Action Group)을 <표 12>와 같이 1966년에야 파병했으며, 그것조차도 1968년 주력을 철수시키고 말았다.⁴⁵⁾

<표 12> 필리핀군의 베트남파병 연도별 현황

연 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병력(명)	17	72	2,061	2,020	1,576	189	74	57	49

자료 :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57과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5), p. 528을 종합, 필자가 재작성.

44) Memorandum for Mr. Bundy, December 31, 1964, "Subject : The Week That Was" From : Chester L. Cooper and James C. Thomson, J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관련 자료철" 제3권.

45) 베트남에 파병된 필리핀군의 민사단은 민사단장(준장) 예하에 건설공병 1개 대대, 보병(경계요원) 1개 대대, 포병 1개 포대, 군수지원중대, 의료 및 농촌개발 1개팀 등 총 2,000여 명 규모였다. 그들은 딘뜨엉(Dibh Tuong), 허우응히아(Hau Nghia), 비엔드엉(Binh Duong), 띠이닌(Tuy Ninh) 등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1년 단위로 2회에 걸쳐 교대 후 철수했다 : 주필무첩05-106,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1985), pp. 52~87.

한편 당시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좋았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가 베트남파병 병력의 재원마련을 위해 고심했던 흔적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66년 상반기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민사단을 베트남에 파병하기 위한 기본법안 통과를 시도했다. 3천5백만 페소(8,950,000달러)의 예산을 요구하는 법률제정이었다. 예산안은 하원을 쉽게 통과했지만 상원의 반대에 직면했다. 그리고 많은 토론과 지연, 추가회의 끝에 상원 임시회의를 열어 6월 4일, 표결 결과 15대 8로 통과되었다. 그 후 예산안은 6월 9일까지 정부와 상원의 합동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6월 18일 서명했다.⁴⁶⁾

위의 자료와 같이 필리핀은 민사단 파병을 위해 당시로서는 거액을 국가 예산에 반영했으며, 그 부담이 필리핀 정부를 압박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한국군에 대한 수당지급의 선례가 있는 미국 정부 역시 어느 정도의 요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그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한국군의 해외수당지급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는 1966년 상반기에 필리핀군과 협상하면서 주한 미군사령관 하우스 대장이 1965년 2월 13일자 서한으로 한국의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했던 내용 즉 “각개장병의 1일 해외수당을 1달러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내용(본문 제2장 2항 참조)을 필리핀군에게 제안해 관철시킨 것이다. 또한 지급총액과 계급간 차액 0.50달러 역시 한국군의 기준과 유사한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은 다음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필리핀 주월 민사단에 대해 미국은 3,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원내용의 대부분은 불도저나 트럭과 같은 중장비 구입과 운용

46)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55

및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상 봉급을 지불했다. 미국은 장병 개인당 1달러의 일당(per diem) 및 해외수당(overseas allowance)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일일 해외수당(the additional daily overseas allowance)은 계급에 따라 지불하기로 했다.⁴⁷⁾

준장	\$6.00	소령	\$4.50	소위	\$3.00	병장	\$0.20
대령	\$5.00	대위	\$4.00	상사	\$1.50	일병	\$0.10
중령	\$5.00	중위	\$3.50	중사	\$0.50	이병	\$0.10

위의 자료는 베트남전쟁을 현장에서 총지휘했던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회고록의 자료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베트남전쟁에) 전투병력을 제공한 한국과 타일랜드를 위해 미국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과 타일랜드는 이미 미국의 군사원조프로그램에 의해 자금과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파견부대의 해외파병보충수당(overseas pay supplement)과 중장비만을 지원했을 뿐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장병들은 각각의 정부가 부담했다.⁴⁸⁾

이상과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베트남에 파병됐던 필리핀군이 한국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급료를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지원이 아닌 필리핀군의 봉급체계에 의한 지불이었다. 당시 필리핀군에게는 기본급료(월급)와 해외수당을 제외하고도 생명수당, 숙소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⁴⁹⁾ 결과적으로 필리핀군의 파병을 위해 미

47)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1985), p. 57.

48) Westmoreland(1976), p. 256.

49) 국방부 인사국(인근 252-358 : 1969. 4. 29), “파월장병 처우개선”, M/F자료실, M/F film No. 01-1-13. 1964-1970 : 당시 국방부는 파월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베트남파병 각국의 해외수당을 비롯한 봉급 체계를 분석해 미국 정부와 협상용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자료의 신뢰성은 높지 않는

국이 필리핀군에게 지원한 내용은 한국군의 파병을 위해 지원한 기준보다 결코 높지 않았으며, 오히려 낮았다. 그 같은 사실은 <표 13>의 해외수당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군의 경우 1966년 7월 1일부로 적용된 하위직 수당 인상액을 반영한 것이다. 하위직 인상전의 기준을 반영해 비교한다면 해외수당과 관련해 두 나라에 적용된 미국의 지원은 정확히 일치한다. 그 이유는 한국군 하위직 수당인상 사실을 미국 정부가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임으로 필리핀은 인상전의 한국군 수당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국방부가 미국측과 추가협상을 위해 작성한 필리핀군의 봉급체계는 <표 14>와 같다. 그러나 제시한 자료는 작성한 시점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협상을 위해 필리핀군의 봉급체계 중 가급적 높은 액수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다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신뢰성은 높지 않게 본다.⁵⁰⁾

<표 13> 미국 정부가 지원한 한국군과 필리핀군의 해외근무수당 비교
(단위 : 달러)

구 분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병장	상병	일병
한 국 군	7.00	6.50	6.00	5.50	5.00	4.50	4.00	2.50	2.00	1.80	1.50	1.35
필리핀군	7.00	6.00	6.00	5.50	5.00	4.50	4.00	2.50	1.50	1.20	1.10	1.10
차 액	0	-0.50	0	0	0	0	0	0	-0.50	-0.60	-0.40	-0.25

자료 : 국회 도서관 입법자료실(사이명턴 청문록, 1971), pp 76~84;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57.

것으로 판단된다.

50) 국방부 인사국(1969), M/F film No. 01-1-13, 1964-1970.

<표 14> 베트남파병 필리핀군의 봉급체계

(단위 : 달러)

구 분	계	기본급여	숙소수당	해외수당	생명수당	가족수당
대 장	1.229.21	384.13	38.41	768.26	38.41	
중 장	1.229.21	384.13	38.41	768.26	38.41	
소 장	1.069.43	332.91	38.41	665.82	33.29	
준 장	903.96	281.69	30.73	563.38	28.16	
대 령	740.04	230.47	25.61	460.94	23.04	
중 령	576.19	179.26	20.49	358.52	17.92	
소 령	451.99	140.85	15.36	281.70	14.08	
대 위	370.04	115.24	12.80	230.48	11.52	
중 위	303.96	94.75	10.24	189.50	9.47	
소 위	264.28	81.95	10.24	163.90	8.19	
준 위	148.13	44.81		89.62	4.48	9.22
상 사	148.13	44.81		89.62	4.48	9.22
중 사	140.19	42.25		84.50	4.22	9.22
하 사	130.20	39.69		79.38	3.96	7.17
병 장	122.83	37.31		74.62	3.73	7.17
상 병	117.63	35.85		71.70	3.50	6.58
일 병	113.74	34.57		69.14	3.45	6.58
이 병	109.77	33.29		66.58	3.32	6.58

(3) 타일랜드의 해외근무수당

타일랜드는 미국·한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베트남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4개 국가 중 하나다. 타일랜드는 1965년 소규모의 관찰단을 파병하고 있다가 1967년 1개 여단을 파병해 사이공(Sai Gon) 동북쪽 비엔호아(Bien Hoa)성에서 활동했으며, 1968년 병력을 중장 사단급 규모로 확대해 활약했다. 그러나 타일랜드군은 훈련 상태가 미약해 공격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방어 전투에서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들의 파병규모와 연도별 현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타일랜드군의 베트남파병 연도별 현황

연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병력(명)	0	16	244	2,205	6,005	11,568	11,586	6,265	38

자료 :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57과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5), p. 528을 종합, 필자가 재작성.

1960년대의 타일랜드 역시 필리핀과 함께 우리나라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좋았던 위치에 있었다. 또한 미국과 안보동맹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미관계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그 때문에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의 해외수당을 최초로 제정할 때 타일랜드 군의 봉급체계를 참고했음을 밝힌 바 있다.⁵¹⁾

한편 타일랜드는 역사적으로 베트남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두 나라 사이에 캄보디아 왕국이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전쟁이나 대결은 없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후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두 나라는 경쟁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역사는 대부분 대립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타일랜드의 파병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미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 같은 배경에 따라 타일랜드 역시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다. 또한 그들 역시 필리핀군 마찬가지로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병된 후 2~3년 후에 파병되었기 때문에 모든 협상에서 한국군의 선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근거는 앞서 제시한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회고록과 기타 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⁵²⁾ 참고적으로 자료의 신뢰성은 높지 않지만 국방부가 미국측과

51) 제44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4차 회의록, <http://www.assembly.go.kr/index.jsp>

52) 타일랜드 정부는 현재까지도 베트남전쟁시 미국 정부가 지원한 해외수당 등 파병지원에

추가협상을 위해 작성한 타일랜드군의 봉급체계는 <표 16>과 같다.⁵³⁾

원래의 자료에는 대령의 수당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령의 수당액은 소령과 중령의 차액을 더해 산정한 후 추가로 반영했다. 그 결과 <표 16>의 자료를 근거로 타일랜드군의 베트남 수당과 한국군의 해외수당을 비교하면 <표 17>과 같다.

한국군과 타일랜드군에게 미국 정부가 지원한 해외수당을 비교하기 위해 적용한 위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또한 타일랜드군의 파병시기와 웨스트모랜드 대장의 회고록 등의 자료를 고려할 때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원한 타일랜드군의 해외수당 역시

<표 16> 베트남파병 타일랜드군의 봉급체계

(단위 : 달러)

구 분	계	기본급여	베트남수당
대 령	435.00	180.00	255.00
중 령	335.00	125.00	210.00
소 령	252.50	87.50	165.00
대 위	210.00	60.00	150.00
중 위	180.00	45.00	135.00
소 위	157.50	37.50	120.00
상 사	115.00	40.00	75.00
중 사	112.50	37.50	75.00
병 장	91.25	31.25	60.00
상 병	84.50	27.50	57.00
일 병	82.00	25.00	57.00
이 병	47.50	10.00	37.50

대해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부분적으로 확인 및 추정할 수 있다 : Westmoreland(1976), p. 256 ;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1985), p. 23. pp. 25~51 ; 국방부 인사국(인근 252-358 : 1969. 4. 29).

53) 국방부 인사국(1969).

<표 17> 미국 정부가 지원한 한국군과 타일랜드군의 해외근무수당 비교
(단위 : 달러)

구 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	병장	상병	일병
한국군	6.50	6.00	5.50	5.00	4.50	4.00	2.50	2.00	1.80	1.50	1.35
타이군	8.50	7.00	5.50	5.00	4.50	4.00	2.50	2.50	2.00	1.90	1.25
차 액	+2.00	+1.00	0	0	0	0	0	+0.50	+0.20	+0.40	-0.10

자료 : 국회 도서관 입법자료실(사이명턴청문록, 1971), pp. 76~84 ; 국방부 인사국(인근252-358 : 1969. 4. 29), “파월장병 처우개선”.

<표 17>과 같이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4) 기타 국가의 베트남파병과 해외근무수당

베트남전쟁의 당사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과 앞서 언급한 필리핀과 타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파병규모와 연도별 현황은 <표 18>과 같다.

<표 18>의 국가들 중 전투병력을 파병한 오스트레일리아는 1965년 1개 대대를 파병한 이래 1969년까지 점차 규모를 늘려 3개 대대를 파병했다. 오스트레일리아군은 사이공 동남쪽 푸억띠이(Phuoc Tuy)성의 푸억레(Phuoc Le)⁵⁴⁾에 주둔하면서 51번 도로와 56번 도로를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

뉴질랜드군은 2개 보병중대와 105mm 1개 포대를 파병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군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했다.⁵⁵⁾ 오스트레일리아군과 뉴질랜드군은 파병규모가 적었지만 엄정한 군기를 과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⁵⁶⁾

54) 베트남이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통일된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푸억띠이(Phuoc Tuy)성은 동나이(Dong Nai)성으로, 푸억레(Phuoc Le)는 바리아(Ba Ria)로 각각 개칭됐다.

55)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1985), pp. 88~114.

<표 18> 기타 국가의 베트남파병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오스트레일리아	200	1,357	4,525	6,818	7,661	7,672	6,763	1,816	128
뉴질랜드	30	119	155	534	516	552	441	60	53
타 이 완	20	20	23	31	29	29	31	31	31
스 페 인	0	0	13	13	12	10	7	0	0

자료 :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Army, 1985), p. 57과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5), p. 528을 종합, 필자가 재작성.

웨스트모랜드 대장이 그들을 한국군보다 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배경에는 그들의 국력도 한몫 했을 것이다. 그들은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의 지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자국의 경비에 의해 파병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상 고마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⁵⁷⁾

한편 타이완은 1964년 미국의 베트남 지원요청에 답하면서 전투부대 파병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은 6·25전쟁에서와 같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타이완의 전투병력 파병 제안을 거절했다. 그 대신 타이완은 의료요원·농촌개발 전문가·정훈 고문관 등을 파병했으며, C-46수송기 2대와 LST 5척도 파병했다.⁵⁸⁾ 따라서 타이완의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이 제공한 특이한 형태의 지원은 없었다. 또한 소수의 병력을 파병한 스페인도 연락단 정도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역시 크게 고

56) Westmoreland(1976), pp. 258~259.

57) 국방부 인사국(1969), M/F film No. 01-1-13, 1964-1970 자료를 통해 당시 오스트레일리아군과 뉴질랜드군의 봉급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58)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1985), pp. 115~119.

려되지 않았다.⁵⁹⁾

마지막으로 남베트남과 미국의 경우다. 남베트남은 전쟁의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해외근무수당의 지원대상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관련문서도 없다. 다만 전반적인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국가와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원조로 장병들의 봉급을 편성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참고적으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위해 작성한 그들의 봉급체계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남베트남은 전쟁의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자료의 공유가 가능했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남베트남과 관련된 자료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⁶⁰⁾

한편 베트남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미국의 경우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와 국력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일 사이밍턴 청문회에 제시된 베트남파병 장병 1인당 연간 유지비로 미국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미군의 경우 1만 3천 달러에 달했으나 한국군의 경우는 5,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했던 것이다.⁶¹⁾ 특히 미군의 경우는 해외근무수당보다는 전투수당, 생활수당, 급식수당, 숙소수당, 별거수당 등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한국군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⁶²⁾

59) Stanley R. Larsen. and L. Collins James(1985), p. 167.

60) 국방부 인사국(1969), M/F film No. 01-1-13, 1964-1970 자료를 통해 당시 남베트남군의 봉급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61)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제140호(1971), pp. 43・65・84.

62) 국방부 인사국(1969), M/F film No. 01-1-13, 1964-1970 자료를 통해 당시 미군의 봉급체계를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미군의 자료는 국방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위한 자료였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같은 자료보다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대부분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해외수당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답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근무수당의 제정 배경과 그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은 베트남에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 요원을 파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계급별 수당 지급기준은 타일랜드와 남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의 수당지급 사례를 참고해 마련했다.

당시 국방부는 파병 대상 장병이 군의관, 위생병, 태권도 교관요원 등 전문요원임을 감안해 그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액수의 수당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의원은 편성된 수당이 과도하게 높은 액수라는 사실과 함께 상후하박(上厚下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상위직 수당을 삭감하는 대신에 하위직 수당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 볼 때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이나 영향력은 없었으며,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다는 사실을 당시 국회 속기록과 국방부의 파병동의안 제안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 정부가 편성한 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게 되는 과정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3국의 군대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한 사실은 있었지만, 장병들의 수당과 봉급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수당 지원요청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은 일정규모의 부대를 장기간 해외에 파병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더라도 한국군의 수당 등 파병 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배경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군 건설지원단 파병을 계기로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을 미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의회를 의식해 해외수당 지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 중 하나가 베트남파병 우방국의 해외수당을 장병 1인당 1달러로 통일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충경비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대해 오히려 해외수당의 인상과 위험수당 또는 전투수당의 신설 등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 같은 한국의 요구는 제9사단의 파병을 계기로 더욱 확대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 보장은 물론 국방력 증강 및 경제개발 지원과 함께 파병된 장병들의 수당과 재해보상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전투병력 증파가 시급했던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파병된 한국군 하위직 병사들의 해외수당이 대폭 인상됐으며, 각종 재해보상금도 2배로 인상됐다. 그러나 한국의 전투수당 신설 요구는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파병을 대가로 한국의 요구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수교한 브라운각서(서한) 등의 외교행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로 인해 후일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의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감수해야 했다.

셋째, 당시 미국 정부가 제공해준 해외근무수당을 한국 정부가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가? 당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한국군 해외수당은 파병된 장병의 계급별 병력 숫자를 표시하는 일보(日報)를 기준해 매월 단위로 주한 미군사령부 고문단을 통해 지급받았으며, 장병들에게 지급한 후 결산하

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청구·지출·결산 등 행정업무에 관한사항 뿐이었다.

반면 각개장병들에게 지급된 해외수당은 80% 이상이 국내로 송금되어 원화로 교환된 후 지정된 수취인에게 지급됐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같은 방식으로 획득된 외화는 정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을 위한 재원이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넷째, 한국군의 해외군무수당의 필리핀이나 타일랜드 등의 같은 수당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는가? 당시 필리핀과 타일랜드는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훨씬 높은 국가였다. 따라서 그들 군대의 보수체계는 한국과 달랐다.

그로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한국군보다 높은 봉급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국의 재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미국이 지원한 해외군무수당은 3개국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한국과 파병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요구에 곤혹스러워했던 미국이 한국군에게 지원한 기준을 필리핀군과 타일랜드군에게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 정부가 국방력 증강과 경제개발 지원 등 국가적인 문제보다 해외군무수당을 인상하는데 주력했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그 같은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워 했던 부분이 제3국의 군대에 대한 수당 지급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반면 군사원조 및 경제원조는 안보동맹국의 지위를 이용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의회를 의식해 해외수당의 문제도 군사원조의 일환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가 해외수당 인상 또는 전투수당 신설 등의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보다 큰 분야에 대한 지원에서 잃은 것이 더 컸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 정부와 베트남관련 연구자들은 파월 장병에게 적용된 해외근무수당의 제정배경과 대미협상 및 지급과정 등을 소상히 알리지 못한 결과 해외수당과 관련된 의혹은 정부와 참전용사간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관련사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해외수당과 관련되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사정을 본 연구를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본 연구의 사례를 기초로 참전용사들의 주장을 보다 깊이 인식하면서 그들의 가치관 확립과 복지대책을 강구하는데 일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규명하지 못한 베트남 전·사상 장병의 재해보상금과 관련된 분야, 고엽제와 관련 분야, 한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들의 활약과 결과 등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세부 분야별 연구가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06. 2. 6, 심사완료일 : 2006. 3. 9)

주제어 : 베트남, 전쟁, 전투, 베트남파병, 해외근무수당

<ABSTRACT>

A Study on the Overseas Allowance of the ROK Armed Forces Personnel deployed to Vietnam

Choi, Yong-ho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points of doubt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overseas allowance paid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ed Forces personnel in the Vietnam War. The points may be summarized in five major strands, and the findings of research into primary sources concerning those poin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circumstances of the determination of the ROK allowance and the US influence in that process. The overseas allowance for the ROK Armed Forces were set in consideration of other countries of comparable economic standards, such as Thailand and South Vietnam. That the US did not intervene or exercise influence in this process, and that the ROK government observed the opin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confirmed through source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stenographer's records.

The second is the process by which the US government came to pay the ROK Armed Forces' overseas allowance. At first the US government was baffled by the Korean request to assume the burden of the allowances. But the ROK government's financial capability was limited, and the US in an urgent need for combat expeditionary forces, could not reject the ROK government's terms. The US, however, declined to the end the Korean request to establish a new combat allowance. The diplomatic activities

carried out in this process, including the Brown Memorandum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ere extraordinary. The records of Symington hearings confirm that the US government had to endure much censure from its own legislature for these decisions.

Third, were there cases of reallocation of the US-provided fund by the ROK government, for purposes other than the stipulated ones? At the time, the US government paid the ROK personnel their overseas service allowances, through the military advisory group at the USFK command, on a monthly basis according to the daily strength reports that listed the deployed personnel's status by ranks, and the accounts were balanced afterwards. It has been confirmed from contemporary sources that the ROK government's access to, and potential for intervening in, this process was limited to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as claim, disbursement and account balancing.

Fourth, was the ROK Armed Forces overseas allowance low in comparison with that paid to the armed forces personnel of the Philippines or Thailand? At the time, the GNP (Gross National Product) per capita of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as 2~4 times that of the ROK, and their overall economic standard also was far higher. Therefore their armed forces' pay systems differed considerably from that of the ROK. It is a fact that those countries' military personnel received pay higher than did the Koreans, but the difference was owing to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finances; the portion assumed by the US government was roughly the same for all three nations, and the sources attest to that effect.

Fifth, if the ROK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effort for a larger allowance, prioritizing it over national issues like the augmentation of defense capabil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aids, would it have been able to receive a greater sum of allowances from the US government? Such a possibility is not inconsiderable. But it is just as possible that by concentrating excessively on increasing the overseas allowance or establishing a

new combat allowance, Korea might have lost more in other, greater categories of interest.

In the past the ROK government as well as researcher of the Vietnam conflict, by failing to illuminate in detail the determination and payment process of overseas allowance for the ROK soldiers deployed to Vietnam, incurred suspicions regarding the fund that became a catalysis for much dis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Vietnam War veterans. In consideration of such,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ed facts through the objectivity of the contemporary primary sources. As a result it may now be able, with the aid of this study, to inspect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some of the suspicion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Vietnam expeditionary forces' overseas allowance.

Key Words : Vietnam, War, Combat, Deployed to Vietnam, Overseas Allowance
